

공 고

「건축법」을 위반한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9. 10. 08.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

공고기간 : 2019. 10. 8. ~ 2019. 10. 22.

공고내용 :

1.공고제목	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2.대 상 자	별첨 참고
3.위반내용	별첨 참고
4.공고내용	위반(무허가)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
5.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건축법 제80조(이행강제금)
6.문 의 사 항	서대문구청 주택과 (☎02-330-1382, 330-1549)

※ 「건축법」 제79조제1항에 따라 위반(무허가)건축물에 대해 2019. 10. 22까지 자진시정(완전철거 및 원상복구)할 것을 최종통보 하오니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예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경우 서대문구청 주택과(☎02-330-1382, 330-1549)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붙임 :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대상자 1부.